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 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칙 <제15200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에 따라 정확도(±2%)를 검사하는 성능 검사 시험이며, 대기오염공정시험법이란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원리 등을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측정 대행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2항과 제17조 1항의 7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THC 측정기 또는 가스측정기는 공정시험법에 적합한 형식승인 측정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측정대행업체, 행정처리기관 등은 "THC 측정기 또는 가스측정기(NOx, SO2, CO, O2)가 형식승인제품이고,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은 사용해도 된다."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고시,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등을 한 자
-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20. 3. 31.]

부칙 <제15200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

부칙 <제15200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4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 2017. 12. 12., 2020. 3. 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삭제 <2012. 2. 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184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 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부칙 <제15200호, 2017. 12. 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 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 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 이 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 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 2. 1.>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부칙 <제15200호, 2017. 12. 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 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 이 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부칙 <제857호,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민원처리사례



HOME > 민원 >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

제목

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2019.06.18 08:53:40

처리
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자의 자가측정 직접수행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 근거한 자가측정 의무를 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때의 지켜야할 관련 규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접 자가측정 수행 시, 그 측정 및 분석, 실험실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자가측정을 위한 허가'나 '외부인증'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분석능력에 대한 평가 의무 및 전문인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자가측정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측정대상 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의 항목별 분석방법 등 참고)를 갖추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조**

032-560-741, *****@korea.kr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제39조(자가측정)

· 담당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목록